

한-인도 CEPA 원산지 절차 요약

구분		한-인도 CEPA	
발효일자		2010. 1. 1.	
협정국		인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주체	한국 - 세관, 상공회의소 인도 - 인도수출검사위원회	
	서식	양국 간 통일증명서식(KIN-CEPA 양식)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12월	
	제출면제기준	미화 1,000불 이하	
	참고사항	소급발급 시 6란(Remarks) 에 "Issued Retrospectively"표기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WO : 완전생산물품 CTSH+RVC 35% : 6단위 세번변경+부가가치 35%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 995개 품목 CC/CTH/CTSH : 세번변경 CC/CTHorRVCx% : 세번변경 or 부가가치x% CC/CTH+RVCx% : 세번변경 + 부가가치x% Specific Process : 특수공정 수행물품 Others : 기타 OP :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부가가치 계산 방법	계산방법	공제법(BD)	
	부가가치기준	25 ~ 50%	
	기준가격	FOB	
	비고	일반기준 : CTSH+RVC 35%	
역외 가공	품목	108개 (HS 6단위)	
	지역	개성공단	
	가공비	역외 부가가치 40% 이하 역내산 재료비 60% 이상	
제3국발행시증장		원산지증명서 14번란 third country invoicing(Name, Address, Country) 에 체크 표시	
원산지 검증	검증	검증방법	(원칙) 간접, (예외) 직접
		검증주체	수출국 세관(간접), 수입국 세관(직접)
	회신	회신기간	3개월(간접), 30일 또는 합의일(직접)
		회신주체	수출국 세관(간접), 수출자 또는 생산자(직접)
	미회신조치		협정관세 적용 제한
	근거조항		제4.11조, 제4.12조
<p>■ CEPA란?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p> <p>-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FTA와 동일한 성격</p>			